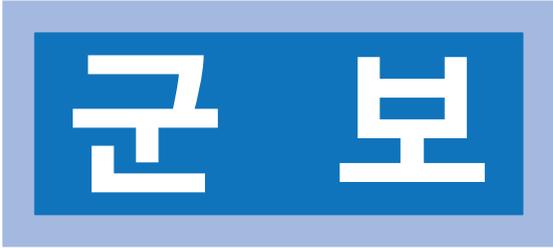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518호 2023. 10. 4. (수)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3-1068호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1
장수군 공고 제2023-1072호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장수군 공고 제2023-1090호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5
장수군 공고 제2023-1093호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
장수군 공고 제2023-109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3
장수군 공고 제2023-109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3
장수군 공고 제2023-1104호	장수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92
장수군 공고 제2023-1106호	장수군 발전제한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0
장수군 공고 제2023-1107호	장수군민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3

회 람									
--------	--	--	--	--	--	--	--	--	--

장수군 공고 제 2023-1068호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협약(안 제1조, 제2조)
- 나. 용자대상업체(안 제3조)
- 다. 자금용자신청 및 심의자료제출(안 제4조, 제5조)
- 라. 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6조, 제6조의2)
- 마. 위원회의 기능 및 용자 조건(안 제7조, 제8조)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불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민생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제출기간 : 2023. 9. 19. ~ 2023. 10. 9.(20일간)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직접방문 등

마.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전화 : 063-350-2182, 팩스 : 063-350-5708)

###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 담당자 (전화 : 063-350-21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붙 입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나.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 1. 제정이유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협약(안 제1조, 제2조)
- 나. 용자대상업체(안 제3조)
- 다. 자금융자신청 및 심의자료제출(안 제4조, 제5조)
- 라. 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6조, 제6조의2)
- 마. 위원회의 기능 및 용자 조건(안 제7조,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7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 4. 금후계획

- 가. 법제·규제 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등 : 2023. 9.
-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회 의결 : 2023. 10.
- 다. 공포 및 시행 : 2023. 11.

### 5. 따로 붙임

- 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나. 비용추계서
- 라. 관련법령

장수군 규칙 제 호

##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용자 및 회수에 관하여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다.

제3조(용자대상업체) 조례 제9조의 용자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
2. 지역특산물 생산업체
3.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5. 사업장과 본사가 장수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에 필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자금용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자(용자금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소상공인 용자(용자금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4. 소상공인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제5조(심의자료 제출)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적격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업체별 우선순위를 작성해서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용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기관장 및 임원,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부서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  
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 각 호 등의 사유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  
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기피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  
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금융자대상업체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기업의 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3. 자금유자업체 선정 및 용자금액 결정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용자조건) ① 자금의 용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1업체 당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대출하며 1개소당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한다.

② 용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용자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변제 마감일 40일전까지 용자금 상환연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용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 변제 마감일 20일전까지는 채무 연기를 신청한 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용자받은 업체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사업 위탁에 따른 협약서

장수군(이하 “갑”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을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업무 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본 기금의 용자 및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는 데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 및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여”라 함은 “갑”이 “을”에게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용자”라 함은 “을”이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상환”이라 함은 “갑”에게 대여받은 자금을 “을”이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의 한도 및 형식) ① 대여의 한도는 매 회계연도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관리기금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자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대여의 형식은 신용대출로 하고 “을”은 “갑”에게 대여받은 자금을 장수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의 용도로 용자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의 절차) ① “갑”은 대여금액과 용자대상 업체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을”에게 통지한다.

-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바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여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의 조건) ① 대여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여금리는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연2%의 용자 금리에서 “을”의 위탁수수료 연○%를 차감한 연○%로 한다.

③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6조(대여금의 상환) ① “을”은 대여금의 상환 시 상환기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갑”에게 상환한다. 다만, “을”은 용자 종결일까지 미용자된 대여금을 용자 종결기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반납하고, 용자대상 업체로부터 상환기한 도래 전에 회수한 용자금은 매월 말 기준 익월 말일까지 “갑”에게 상환한다.

② “을”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대해 연○%의 금리를 적용하여 용자금 상환기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갑”에게 납입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미용자된 대여금 상환의 경우에는 그 상환원금에 대해 “을”의 매년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 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할 대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용자기관 일반자금 대출 연체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기간의 계산) 대여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대여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8조(용자 및 회수) ① “갑”은 용자대상업체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업체에게 용자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통보한 대상 업체가 “을”의 여신규정에 의거 용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업체별 통보금액을 용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그 사유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통보 받은 업체에 자금을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해 “을”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④ “갑”은 융자받은 업체가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융자받은 업체에게 융자금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채권관리) ① 협약 체결 후 발생하는 채권은 “을”이 채무관계를 진다.

② 융자금에 대한 신규 채권관리업무는 “을”의 채권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채권관리를 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협약한 것으로 본다.

②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폐지되더라도 마지막 자금 회수까지 협약을 유지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① “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상황을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필요한 경우 대여 및 융자에 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수정 또는 해석) 본 협약은 “갑”과 “을”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계조항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검사) “갑”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사업 운영상황을 처리하는 출납상황과 관련 장부를 정기 또는 필요할 때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협약서는 협약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갑”, “을”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장 수 군 수 (인)

(을) ○○ 금 용 기 관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

1. 업 체 명 :
2. 공장소재지 : (전화☎ : )  
(주사무소)  
(법인의 주사무소)
3. 대 표 자 : (법 인 번 호 : )  
(생 년 월 일 : )
4. 융자 신청액 :  
- 융자연기 신청액 :
5. 자금 용도 :
6. 업체 현황

업 종	주생산품		
공장규모	대지	m <sup>2</sup> (생산시설	m <sup>2</sup> + 부대시설 m <sup>2</sup> )
년간생산	생산량: 생산액:	수 출	년간 천불
종 업 원	명(생산직	명 + 사무직	명)
자 산	백만원(자본	백만원 + 부채	백만원)
신청유형	(연기신청유형)		

상기와 같이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융자연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기업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기 간 :

2. 사 업 개 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4. 생산효과 및 수익성 :

5. 융자금 상환계획 :

6. 기업 운영실태 :

7. 기 타 :



[별지 제5호서식]

## 소상공인 사업계획서

사업 장 현 황	소유 구분	자가	만원		사업장면적	평
		임차	전세	만원		권리금
	월세		만원(보증금:    만원)		월관리비	만원
입지 구분	<input type="checkbox"/> 주택가 <input type="checkbox"/> 학교·학원가 <input type="checkbox"/> 사무실주변 <input type="checkbox"/> 번화가 <input type="checkbox"/> 역주변 <input type="checkbox"/> 유흥가 <input type="checkbox"/> 시장 <input type="checkbox"/> 유원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지 계 획	구분	신청일 현재 월평균		1년 후 예상 월평균		
	매출액	만원		만원		
	지출액	만원		만원		
	순이익	만원		만원		
소요 자금	임차보증금	시설비	운전자금	초기상품구입비	기타 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자금 조달 계획	총 소요자금	자키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타(차입금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사업 추 진 계 획	<p>○ 판매 및 마케팅계획 :</p> <p>○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p> <p>○ 기타 추진전략 :</p> <p style="text-align: center;">※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p>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금조성액 37억  
※ 총 기금조성액 : 37억원 → 5년 경과 후 존치 필요성 있으면 연장가능
3. 비용추계의 결과  
-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2023년까지 총 37억원을 조성
4.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군비
  
5.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서윤정, 팀원 조영래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 장수군 예산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등으로 2023년 현재까지 총37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2024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금으로 매년 10억원을 운용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것으로 추정됨.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여성·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2023-1072호

##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일

장 수 군 수

### 1. 개정이유

-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영과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 및 예비비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안 제5조)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나. 예비비 항목 신설(안 제6조)

### 3. 금후계획

- 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 2023. 10월중
- 나. 공포 및 시행 : 2023. 11월중

**4. 따로붙임**

- 가.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나. 관계 법령 발췌서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 1) 전화 : 063-350-2525
- 2) 팩스번호 : 063-350-5718
- 3) 전자우편(이메일) : juhsm@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홈페이지(www.jangsu.go.kr)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로 한 다. <u>&lt;신 설&gt;</u>	제5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u>제6조</u> (생 략)	<u>제6조</u>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 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 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u>제7조</u> (현행 제6조와 같음)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장수군 공고 제2023-1090호

##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장 수 군 수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의3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고 명시,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2023년 이후 향후 5년간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변경(안 제7조의3)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전화 : 063-350-2082, 팩스 : 063-350-5703)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 4. 기 타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담당자(전화 063-350-20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붙 입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나.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제7조의3(존속기한)	-----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	2028년 12월 31일--	
한다.		---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치
-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동)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장수군 공고 제2023-1093호

##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 장 수 군 수

#### 1. 개정이유

-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 2. 주요내용

- 감면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 기한 3년 연장 (2023.12.31.⇒ 2026.12.31.)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1항)
  -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안 제10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3. 금후계획**

가. 입법예고 : 2023. 9월(20일간)

나. 조례규칙심의회 : 2023. 10월

다. 확정 및 공포 : 2023. 11월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규조문대비표

다. 관련법령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재  
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  
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  
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재무과

1) 전화 : 063-350-2216

2) 팩스번호 : 063-350-5710

3) 전자우편(이메일) : bons@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홈페이지([www.jangsu.go.kr](http://www.jangsu.go.kr)) “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는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 ----- ----- --- 2026년 12월 31일----- ----- ----- 2026년 12월 31일----- ----- -----.</p>
<p>② (생략)</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 ----- ----- ----- ----- 2026년 12월 31일----- ----- ----- -----</p>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  
-----  
-----.

## 관계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장수군 공고 제2023-1094호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 장 수 군 수

#### 1. 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1. 18.)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수군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 도 → 전북자치도
-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10.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우 55634/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058(063-350-5702)

3) 전자우편(이메일) : you923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063-350-20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장 기획조정실 소관

제1조(「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장수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군 마을세무사 운  
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장 행정지원과 소관

제3조(「장수군 공인 조례」의 개정) 장수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도보”를 “전북특별자치도보”로 한다.

제4조(「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  
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3장 주민복지과 소관

제5조(「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개정)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를 “전북자치도”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제6조(「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의 개정)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4장 재무과 소관

제9조(「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

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의 개정)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 제5장 문화관광과 소관

제11조(「장수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장수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 제6장 환경위생과 소관

제15조(「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장수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장수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장수군 뜯봄샘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군 뜯봄샘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장수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장수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7장 농업정책과 소관

제19조(「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조(「장수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

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8장 민생경제과 소관

제21조(「장수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장수군 사회

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조(「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

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9장 농산유통과 소관

제24조(「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5조(「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6조(「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개정)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나목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7조(「장수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장수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8조(「장수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 제10장 산림공원과 소관

제29조(「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11장 안전재난과 소관

제30조(「장수군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군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본문 중 “전라북도 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1조(「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조(「장수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장수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장수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의 개정) 장수군 재난기본소

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4조(「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5조(「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6조(「장수군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하“전라북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를 “(이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이

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7항 단서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12장 건설교통과 소관

제37조(「장수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4제1호 및 제3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13장 기술보급과 소관

제38조(「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14장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제39조(「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연서주민수) 장수군과 장수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u>전라북도지사</u> 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연서주민수) ----- -----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 -----.

2. 장수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별지 제2호서식]</p> <p>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p> <p>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p> <p>행정안전부(지방행정과의)와 민국세무사회(가) 전국 지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세무사 제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수집목적</th> <th>보유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성명, 사후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td> <td>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td> <td>2년</td> </tr> </tbody> </table> <p>*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총괄부속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제공받는 기관</th> <th>제공목적</th> <th>제공하는 항목</th> <th>보유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전국 지치단체(24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d> <td>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td> <td>성명, 사후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td> <td>2년</td> </tr> <tr> <td>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단체와 동기관등) 관련 부서</td> <td>마을세무사 관련 정보들</td> <td>주민, 팩스번호</td> <td></td> </tr> </tbody> </table> <p>*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총괄부속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p> <p>&lt;기타 고지 사항&gt;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접해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p> <p>년 월 일 담당지역 전라북도 장수군 성명 (서명 또는 인)</p> <p>장수군수 귀하</p>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후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	2년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지치단체(24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성명, 사후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단체와 동기관등) 관련 부서	마을세무사 관련 정보들	주민, 팩스번호		<p>[별지 제2호서식]</p> <p>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p> <p>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p> <p>행정안전부(지방행정과의)와 민국세무사회(가) 전국 지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세무사 제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수집목적</th> <th>보유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성명, 사후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td> <td>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td> <td>2년</td> </tr> </tbody> </table> <p>*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총괄부속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제공받는 기관</th> <th>제공목적</th> <th>제공하는 항목</th> <th>보유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전국 지치단체(24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d> <td>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td> <td>성명, 사후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td> <td>2년</td> </tr> <tr> <td>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단체와 동기관등) 관련 부서</td> <td>마을세무사 관련 정보들</td> <td>주민, 팩스번호</td> <td></td> </tr> </tbody> </table> <p>*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총괄부속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p> <p>&lt;기타 고지 사항&gt;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접해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p> <p>년 월 일 담당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성명 (서명 또는 인)</p> <p>장수군수 귀하</p>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후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	2년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지치단체(24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성명, 사후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단체와 동기관등) 관련 부서	마을세무사 관련 정보들	주민, 팩스번호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후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	2년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지치단체(24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성명, 사후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단체와 동기관등) 관련 부서	마을세무사 관련 정보들	주민, 팩스번호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후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	2년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지치단체(24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성명, 사후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단체와 동기관등) 관련 부서	마을세무사 관련 정보들	주민, 팩스번호																																			

3. 장수군 공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공고)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 각인하였거나 개인·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u>도보</u>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9조(공고) ①----- ----- ----- ----- <u>전북특별자치도보</u>-----.</p> <p>② (현행과 같음)</p>

4.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명예군민증서(제3조와 관련)</p> <p>계 호</p> <p>국 적 :                      성 명 :</p> <p>주소 또는 소속 :                      생년월일 :</p> <p>대한민국 전라북도 장수군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장수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민국 전라북도 장수군수</p> <hr/> <p style="text-align: center;">Honorary Citizen of the Chang - soo County, Korea</p> <p>In Recognition of outstanding character and achievement, the County of Chang - soo does gratefully present this award of Honorary Citizen to : and hereby affirms that the citizens of Changsoo-gun do hold this distinguishes person in high regard and esteem.</p> <p style="text-align: center;">Date</p> <p style="text-align: center;">County governor</p>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명예군민증서(제3조와 관련)</p> <p>계 호</p> <p>국 적 :                      성 명 :</p> <p>주소 또는 소속 :                      생년월일 :</p> <p>대한민국 <u>전북특별자치도</u> 장수군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장수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민국 <u>전북특별자치도</u> 장수군수</p> <hr/> <p style="text-align: center;">Honorary Citizen of the Chang - soo County, Korea</p> <p>In Recognition of outstanding character and achievement, the County of Chang - soo does gratefully present this award of Honorary Citizen to : and hereby affirms that the citizens of Changsoo-gun do hold this distinguishes person in high regard and esteem.</p> <p style="text-align: center;">Date</p> <p style="text-align: center;">County governor</p>

## 5.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u>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u> 2. 3. (생략) 4. <u>도 및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u> 5. ~ 8. (생략)	제2조(기금의 조성) ----- ----- ----- ----- 1. <u>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u> 2. 3. (현행과 같음) 4. <u>전북자치도</u> ----- 5. ~ 8. (현행과 같음)

## 6.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운영경비) ① (생략) ② 보육료는 법령에 따라 <u>전라북도지사가</u> 정하는 표준보육단가 범위 안에서 수납한다.	제12조(운영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

7.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b>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사용료(제2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이용시설</th> <th rowspan="2">기준(시간)</th> <th colspan="2">이용료(원)</th> </tr> <tr> <th>청소년(청소년 단체)</th> <th>일반(성인)</th> </tr> </thead> <tbody> <tr> <td>실내집회장</td> <td>1회(2시간)</td> <td>무료</td> <td>30,000원</td> </tr> </tbody> </table> <p>※ 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에게 우선권이 부여됨으로 일반인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li> <li>○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1시간 초과시마다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li> </ul> <p>※ 사용료의 면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제2조의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li> <li>○ 뜻가 또는 전라북도, 장수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li> <li>○ 장수군 관할구역 내의 학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li> <li>○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이용시설	기준(시간)	이용료(원)		청소년(청소년 단체)	일반(성인)	실내집회장	1회(2시간)	무료	30,000원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b>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사용료(제2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이용시설</th> <th rowspan="2">기준(시간)</th> <th colspan="2">이용료(원)</th> </tr> <tr> <th>청소년(청소년 단체)</th> <th>일반(성인)</th> </tr> </thead> <tbody> <tr> <td>실내집회장</td> <td>1회(2시간)</td> <td>무료</td> <td>30,000원</td> </tr> </tbody> </table> <p>※ 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에게 우선권이 부여됨으로 일반인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li> <li>○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1시간 초과시마다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li> </ul> <p>※ 사용료의 면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제2조의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li> <li>○ 뜻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li> <li>○ 장수군 관할구역 내의 학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li> <li>○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이용시설	기준(시간)	이용료(원)		청소년(청소년 단체)	일반(성인)	실내집회장	1회(2시간)	무료	30,000원
이용시설			기준(시간)	이용료(원)																	
	청소년(청소년 단체)	일반(성인)																			
실내집회장	1회(2시간)	무료	30,000원																		
이용시설	기준(시간)	이용료(원)																			
		청소년(청소년 단체)	일반(성인)																		
실내집회장	1회(2시간)	무료	30,000원																		

8.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별지 제1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4">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신청서</th> </tr> </thead> <tbody> <tr> <td>신청인</td> <td>성명</td> <td colspan="2">생년월일</td> </tr> <tr> <td>가족사항</td> <td>주소</td> <td colspan="2">전화번호</td> </tr> <tr> <td>주거형태</td> <td>주거형태</td> <td>주거형태</td> <td>주거형태</td> </tr> <tr> <td>소득</td> <td>소득</td> <td>소득</td> <td>소득</td> </tr> <tr> <td>신청내용</td> <td colspan="3">신청내용</td> </tr> <tr> <td>신청일자</td> <td colspan="3">신청일자</td> </tr> <tr> <td>신청장소</td> <td colspan="3">신청장소</td> </tr> <tr> <td>신청인</td> <td colspan="3">신청인</td> </tr> </tbody> </table>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가족사항	주소	전화번호		주거형태	주거형태	주거형태	주거형태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장소	신청장소			신청인	신청인			<p>[별지 제1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4">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신청서</th> </tr> </thead> <tbody> <tr> <td>신청인</td> <td>성명</td> <td colspan="2">생년월일</td> </tr> <tr> <td>가족사항</td> <td>주소</td> <td colspan="2">전화번호</td> </tr> <tr> <td>주거형태</td> <td>주거형태</td> <td>주거형태</td> <td>주거형태</td> </tr> <tr> <td>소득</td> <td>소득</td> <td>소득</td> <td>소득</td> </tr> <tr> <td>신청내용</td> <td colspan="3">신청내용</td> </tr> <tr> <td>신청일자</td> <td colspan="3">신청일자</td> </tr> <tr> <td>신청장소</td> <td colspan="3">신청장소</td> </tr> <tr> <td>신청인</td> <td colspan="3">신청인</td> </tr> </tbody> </table>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가족사항	주소	전화번호		주거형태	주거형태	주거형태	주거형태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장소	신청장소			신청인	신청인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가족사항	주소	전화번호																																																																							
주거형태	주거형태	주거형태	주거형태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장소	신청장소																																																																								
신청인	신청인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가족사항	주소	전화번호																																																																							
주거형태	주거형태	주거형태	주거형태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장소	신청장소																																																																								
신청인	신청인																																																																								

[별지 제2호서식]

틈새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자 조사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리부도 장수군 (전화: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월소득	건강상태	동거여부
주거실태	<input type="checkbox"/> 자기( ) <input type="checkbox"/> 빌세(보증금 )		<input type="checkbox"/> 전세( ) <input type="checkbox"/> 부류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구제적인 주거상황						
소 득	원 ( )						
일반재산	원 ( )						
금융재산	원 ( )						
조사자의견	(여권필요사유)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틈새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자 조사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월소득	건강상태	동거여부
주거실태	<input type="checkbox"/> 자기( ) <input type="checkbox"/> 빌세(보증금 )		<input type="checkbox"/> 전세( ) <input type="checkbox"/> 부류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구제적인 주거상황						
소 득	원 ( )						
일반재산	원 ( )						
금융재산	원 ( )						
조사자의견	(여권필요사유)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장수군수 귀하							

9. 장수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p>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u>전라북도지사가</u> 작성 제공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 ----- -----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 ----- ----- 1. ~ 6. (현행과 같음)</p>
--	--

10.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u>전라북도</u>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장수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p>	<p>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 ----- <u>전북특별자치도</u> ----- ----- ----- ----- ----- ----- ----- ----- ----- ----- ----- -----</p>

<p>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u>전라북도지사</u>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u>전라북도지사</u>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u>전라북도지사</u>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⑤·⑥ (생략)</p>	<p>-----</p> <p>-----</p> <p>-----.</p> <p>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p> <p>-----</p> <p>-----.</p> <p>④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p> <p>-----</p> <p>-----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p> <p>-----.</p> <p>⑤·⑥ (현행과 같음)</p>						
<p><b>11. 장수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b></p>							
<table border="1"> <thead> <tr> <th>현행</th> <th>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3조(군수의 책무) ① (생략)</td> <td>제3조(군수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td> </tr> <tr> <td>② 군수는 장수가야 유적지구</td> <td>②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생략)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장수가야 유적지구	② -----	
현행	개정안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생략)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장수가야 유적지구	② -----						

대하여 문화재청장·전라북도  
지사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보존  
·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전북특별  
자치도지사-----  
-----  
-----.

## 12.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조금)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 또는 장수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 사업자 및 등록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전라북도의</u> 관광패스라인 구축 및 토탈 관광 연계사업	3. <u>전북특별자치도</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 13.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대곡 관광지(이하 “관광지”	1. -----

<p>라 한다)”란 <u>전라북도</u> 장수군 장계면 논개생가길 31-13 일원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전통한옥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p> <p>2. ~ 9. (생략)</p>	<p>----- <u>전북특별자치도</u> -----</p> <p>-----</p> <p>-----</p> <p>-----</p> <p>-----</p> <p>-----</p> <p>-----</p> <p>-----</p> <p>-----</p> <p>2. ~ 9. (현행과 같음)</p>
---	---

14. 장수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6조(해설운영 등) ① (생략)</p> <p>② 군수는 해설사에게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u>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u>」 제7조에 따른 표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p> <p>③ 해설사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u>전라북도지사</u> 또는 군수가 발급한 신분증(표식)을 소지하고 근무복을 착용하여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p>	<p>제6조(해설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③ -----</p> <p>-----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p> <p>-----</p> <p>-----</p> <p>-----</p> <p>-----</p> <p>-----</p>

15.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①·② (생략) ③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u>전라북도</u> 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전북특별자치도</u> ----- -----.

16. 장수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u>전라북도지사</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생략)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u>전라북도지사</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③ (현행과 같음)

## 17.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감면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u>전라북도</u> , 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3. (생 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 ----- ----- ----- -----. 1. ----- <u>전북특별자치도</u> ----- ----- 2. 3. (현행과 같음)

## 18. 장수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또는 <u>전라북도</u> 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전북특별자치도</u> ----- ----- -----.

## 19.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원범위 및 방법) 이 조 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농 업·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 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사업비 를 보조 또는 용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u>전라북도</u>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생 략)	제13조(지원범위 및 방법) ----- ----- ----- ----- ----- ----- ----- ----- ----- 1. ----- <u>전북특별자치도</u> - ----- ----- ----- ----- ----- 2. (현행과 같음)

## 20. 장수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u>전라북도</u> 여성농어업인정책 기 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 ----- <u>전북특별자치도</u> ----- ----- ----- ----- ② (현행과 같음)

## 21. 장수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p> <p>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p> <p>나. ~ 너. (생략)</p> <p>4. ~ 6. (생략)</p> <p>제19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 -----.</p> <p>가. ----- -----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u>사</u>----- ----- -----</p> <p>나. ~ 너. (현행과 같음)</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19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 ----- ----- ----- -----.</p>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 <u>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u> 」에 따른 교육지원청	3. <del>전북특별자치도</del>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22.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제외대상)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부 또는 <u>전라북도</u> 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 <u>전북특별자치도</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23.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u>전라북도지사</u> 가 수립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p>한 <u>전라북도</u> 유통산업발전시행 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장수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전라북도</u>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p> <p>6. (생략)</p> <p>④ (생략)</p>	<p>-- <u>전북특별자치도</u> -----</p> <p>-----</p> <p>-----</p> <p>-----</p> <p>-----</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전북특별자치도</u> -----</p> <p>-----</p> <p>6.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

24.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란 <u>전라북도</u></p>	<p>제2조(정의) -----</p> <p>-----</p> <p>1. -----</p> <p>----- <u>전북특별자치도</u></p>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1475번지 일원 및 호덕리 1207번지 일원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3. (생략)	<u>치도</u> ----- ----- ----- ----- ----- 2.·3. (현행과 같음)
---	---

## 25. 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농림축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u>전라북도</u>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전북특별자치도</u> ----- ----- ----- -----.

## 26.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제10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생략)</p> <p>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가. (생략)</p> <p>나. <u>전라북도</u>장수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공무원</p> <p>다. ~ 바. (생략)</p> <p>④·⑤ (생략)</p>	<p>-----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전북특별자치도</u>----- -----</p> <p>다. ~ 바.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	---

27. 장수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8. “이외 지역”이란 군을 제외한 <u>전라북도</u> 내 지역을 말하며,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需給)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포함할</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u>전북특별자치도</u> ----- ----- -----</p>



## 29.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누리파크(이하 “공원”이라 한다)”란 <u>전라북도</u>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 일원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원 및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정의) ----- -----. 1. ----- ----- <u>전북특별자치도</u> ----- ----- ----- -----. 2. ~ 5. (현행과 같음)

## 30. 장수군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확보) ① ~ ④ (생략) 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u>전라북도 교육감</u> 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가 통합되지 않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확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u> --- -----. ----- ----- -----.

## 31.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결정) ① (생략)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u>전라북도지사</u> 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

## 32. 장수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u>전라북도지사</u>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2조(상황보고) ① ----- -----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 -----.  ②·③ (현행과 같음)

## 33. 장수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u>전라북도</u> 에서 장수군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u>전라</u>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① ---- ----- <u>전북특별자치도</u> ----- ----- ----- <u>전북</u>

<p>북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p>	<p>특별자치도----- ----- ----- -----.</p>
---	--

**34.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 6. (생략)</p> <p>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u>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u>와 연계된 업무</p> <p>8. (생략)</p>	<p>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u>----- -----</p> <p>8. (현행과 같음)</p>
<p>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u>전라북도지사</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 -----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p>	<p>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p>



## 35.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u>전라북도</u>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계획 통보) ----- ----- ----- ----- ----- <u>전북특별자치도</u> ----- ----- ----- -----.

## 36. 장수군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장수군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u>전라북도</u>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전북특별자치도</u> ----- ----- (이하 “전

<p><u>라북도 지역본부장</u>”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p>	<p><u>북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u>”이라 한다)----- -----</p>
<p>②·③ (생략)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 ⑥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장수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u>전라북도</u> 지역본부장이 장수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장수군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⑦ ----- ----- ----- ----- <u>전북특별자치도</u> ----- ----- ----- ----- -----</p>
<p>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생략)</p>	<p>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u>전라북도</u>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 ----- ----- ----- <u>전북특별자치도</u> ----- -----</p>
<p>③·④ (생략)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p>	<p>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p>

<p>청 등) ① 장수군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u>전라북도</u>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p> <p>② 장수군 지역본부장은 <u>전라북도</u> 및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청 등) ① ----- ----- ----- <u>전북특별자치도</u> ----- ----- ----- -----.</p> <p>② ----- <u>전북특별자치도</u>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	--

37. 장수군 군계획 조례

현행	개정안
<p>제61조의4(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u>전라북도</u> 내 시·군</p>	<p>제61조의4(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 ----- ----- ----- -----.</p> <p>1. ----- ----- ----- <u>전북특별자치도</u> -----</p>

<p>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 · 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p> <p>2. (생략)</p> <p>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 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u>전라북도</u> 내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 시설만 해당한다) ,</p>	<p>----- -----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u>전북특별자치도</u>----- ----- -----</p>
---	--

**38.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u>전라북도</u>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 일원 에 둔다.</p>	<p>제3조(위치) ----- <u>전북특별</u> <u>자치도</u> ----- -----.</p>

**39.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1조(사용료 등 감면) ① (생 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p>	<p>제11조(사용료 등 감면) ① (현행 과 같음) ② ----- ----- -----</p>

<p>,</p> <p>1. ~ 4. (생략)</p> <p>5. 장수군민으로 국가·<u>전라북도</u> 및 장수군이 대표선수로 선발하여 경기연습을 하는 경우</p> <p>③·④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전북특별자치도</u> -----</p> <p>-----</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장수군 공고 제2023-1095호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 장 수 군 수

#### 1. 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1. 18.)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수군 규칙을 일괄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 도 → 전북자치도

-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10.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우 55634/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058(063-350-5702)

3) 전자우편(이메일) : you923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063-350-20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규칙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 중 “전라북도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장수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장수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장  
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이용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이용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1.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세입징수 결과 제출) 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u>전라북도지사</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 제출) ----- ----- ----- ----- ----- <u>전북특별</u> <u>자치도지사</u> ----- . -- ----- ----- -----.
제17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가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u>전라북도도지사</u> 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 -----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 ----- ----- -----.

### 2. 장수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 ----- -----.

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생략)

2.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자

3. 4. (생략)

②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 1. 이 조서는 법안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장수권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 후 보낼 곳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로비로 10 장수군청 재무과  
우편번호 : 55634  
※ 문의사항 전화 : (063) 350-0000

-----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전북특별자치도 -----  
-----  
-----  
--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 1. 이 조서는 법안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장수권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 후 보낼 곳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로비로 10 장수군청 재무과  
우편번호 : 55634  
※ 문의사항 전화 : (063) 350-0000

3.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용자 및 상환조건) ① (생략)</p> <p>②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 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와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u>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대출금리</u>로하며,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 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별지 제2호서식]</p>	<p>제7조(용자 및 상환조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u>」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2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caption style="text-align: center;">식품진흥기금용자신청서</caption> <tr> <td style="width: 20%;">신청인</td> <td style="width: 20%;">① 대표자 성명</td> <td style="width: 20%;">② 생년월일</td> <td style="width: 20%;">③ 연락처</td> <td style="width: 20%;">④ 주소(소재지)</td> <td style="width: 20%;">⑤ 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사업체유무</td> <td>① 영업장출연력</td> <td>비</td> <td>② 가산 혜택</td> <td colspan="2">필인</td> </tr> <tr> <td>대상업종</td> <td>① 영 종</td> <td colspan="4"> <input type="checkbox"/> 식품제조·가공업 <input type="checkbox"/> 푸식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제과점  <input type="checkbox"/> 일반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조식음식점 <input type="checkbox"/> 향토기통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취약농산영점 <input type="checkbox"/> 단원주점 <input type="checkbox"/> 유류주점                 </td> </tr> <tr> <td>자금 용자 신청 내역</td> <td colspan="2">③ 필요금액</td> <td colspan="3">④ 용자신청금액</td> </tr> <tr> <td colspan="6">                     * 위와 같이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td> </tr> <tr> <td>사관확인</td> <td colspan="2">20년 월 일</td> <td colspan="3">지방은행확인</td> </tr> <tr> <td>확인자</td> <td colspan="2">신청인 (인)</td> <td>은행명</td> <td colspan="2"></td> </tr> <tr> <td>직 성명</td> <td colspan="2"></td> <td>대 순</td> <td><input type="checkbox"/> 가 동</td> <td><input type="checkbox"/> 불가동</td> </tr> <tr> <td>(인)</td> <td colspan="2"></td> <td>확인자</td> <td colspan="2">(인)</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귀하.</td> </tr> <tr> <td colspan="6">                     &lt;주비서부&gt;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금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td> </tr> </table>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연락처	④ 주소(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유무	① 영업장출연력	비	② 가산 혜택	필인		대상업종	① 영 종	<input type="checkbox"/> 식품제조·가공업 <input type="checkbox"/> 푸식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제과점 <input type="checkbox"/> 일반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조식음식점 <input type="checkbox"/> 향토기통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취약농산영점 <input type="checkbox"/> 단원주점 <input type="checkbox"/> 유류주점				자금 용자 신청 내역	③ 필요금액		④ 용자신청금액			* 위와 같이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사관확인	20년 월 일		지방은행확인			확인자	신청인 (인)		은행명			직 성명			대 순	<input type="checkbox"/> 가 동	<input type="checkbox"/> 불가동	(인)			확인자	(인)		시장·군수 귀하.						<주비서부>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금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caption style="text-align: center;">식품진흥기금용자신청서</caption> <tr> <td style="width: 20%;">신청인</td> <td style="width: 20%;">① 대표자 성명</td> <td style="width: 20%;">② 생년월일</td> <td style="width: 20%;">③ 연락처</td> <td style="width: 20%;">④ 주소(소재지)</td> <td style="width: 20%;">⑤ 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사업체유무</td> <td>① 영업장출연력</td> <td>비</td> <td>② 가산 혜택</td> <td colspan="2">필인</td> </tr> <tr> <td>대상업종</td> <td>① 영 종</td> <td colspan="4"> <input type="checkbox"/> 식품제조·가공업 <input type="checkbox"/> 푸식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제과점  <input type="checkbox"/> 일반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조식음식점 <input type="checkbox"/> 향토기통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취약농산영점 <input type="checkbox"/> 단원주점 <input type="checkbox"/> 유류주점                 </td> </tr> <tr> <td>자금 용자 신청 내역</td> <td colspan="2">③ 필요금액</td> <td colspan="3">④ 용자신청금액</td> </tr> <tr> <td colspan="6">                     * 위와 같이 「<u>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td> </tr> <tr> <td>사관확인</td> <td colspan="2">20년 월 일</td> <td colspan="3">지방은행확인</td> </tr> <tr> <td>확인자</td> <td colspan="2">신청인 (인)</td> <td>은행명</td> <td colspan="2"></td> </tr> <tr> <td>직 성명</td> <td colspan="2"></td> <td>대 순</td> <td><input type="checkbox"/> 가 동</td> <td><input type="checkbox"/> 불가동</td> </tr> <tr> <td>(인)</td> <td colspan="2"></td> <td>확인자</td> <td colspan="2">(인)</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귀하.</td> </tr> <tr> <td colspan="6">                     &lt;주비서부&gt;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금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td> </tr> </table>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연락처	④ 주소(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유무	① 영업장출연력	비	② 가산 혜택	필인		대상업종	① 영 종	<input type="checkbox"/> 식품제조·가공업 <input type="checkbox"/> 푸식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제과점 <input type="checkbox"/> 일반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조식음식점 <input type="checkbox"/> 향토기통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취약농산영점 <input type="checkbox"/> 단원주점 <input type="checkbox"/> 유류주점				자금 용자 신청 내역	③ 필요금액		④ 용자신청금액			* 위와 같이 「 <u>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사관확인	20년 월 일		지방은행확인			확인자	신청인 (인)		은행명			직 성명			대 순	<input type="checkbox"/> 가 동	<input type="checkbox"/> 불가동	(인)			확인자	(인)		시장·군수 귀하.						<주비서부>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금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연락처	④ 주소(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유무	① 영업장출연력	비	② 가산 혜택	필인																																																																																																																																	
대상업종	① 영 종	<input type="checkbox"/> 식품제조·가공업 <input type="checkbox"/> 푸식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제과점 <input type="checkbox"/> 일반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조식음식점 <input type="checkbox"/> 향토기통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취약농산영점 <input type="checkbox"/> 단원주점 <input type="checkbox"/> 유류주점																																																																																																																																			
자금 용자 신청 내역	③ 필요금액		④ 용자신청금액																																																																																																																																		
* 위와 같이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사관확인	20년 월 일		지방은행확인																																																																																																																																		
확인자	신청인 (인)		은행명																																																																																																																																		
직 성명			대 순	<input type="checkbox"/> 가 동	<input type="checkbox"/> 불가동																																																																																																																																
(인)			확인자	(인)																																																																																																																																	
시장·군수 귀하.																																																																																																																																					
<주비서부>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금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연락처	④ 주소(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유무	① 영업장출연력	비	② 가산 혜택	필인																																																																																																																																	
대상업종	① 영 종	<input type="checkbox"/> 식품제조·가공업 <input type="checkbox"/> 푸식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제과점 <input type="checkbox"/> 일반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조식음식점 <input type="checkbox"/> 향토기통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취약농산영점 <input type="checkbox"/> 단원주점 <input type="checkbox"/> 유류주점																																																																																																																																			
자금 용자 신청 내역	③ 필요금액		④ 용자신청금액																																																																																																																																		
* 위와 같이 「 <u>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사관확인	20년 월 일		지방은행확인																																																																																																																																		
확인자	신청인 (인)		은행명																																																																																																																																		
직 성명			대 순	<input type="checkbox"/> 가 동	<input type="checkbox"/> 불가동																																																																																																																																
(인)			확인자	(인)																																																																																																																																	
시장·군수 귀하.																																																																																																																																					
<주비서부>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금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지 제3호서식]

영양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명		④주소
사업현황 및 사업계획	⑤영양개선면적	㎡( )	
	⑥계획내용		
가급승가 신청내역	①원소요금액	②승가신청금액	③비고
<p>위와 같이 적라복도나등인통기문급기및은용포제 제8호 및 등포제시행 규의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시장군수 귀하</p>			

[별지 제3호서식]

영양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명		④주소
사업현황 및 사업계획	⑤영양개선면적	㎡( )	
	⑥계획내용		
가급승가 신청내역	①원소요금액	②승가신청금액	③비고
<p>위와 같이 「지방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기준 및 운영규칙」 제8호 및 등포제 시행규의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시장군수 귀하</p>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 2023-1104호

## 장수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일

### 장 수 군 수

#### 1. 제정사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군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범위 명문화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명시

#### 2. 주요 제정내용

-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를 지정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하며 참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5조)

-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장비·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안 제8조~제9조)
  -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3. 관련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 서식1]를 장수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자 성명)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환경위생과장)
- 2) 팩 스 : 063-350-5718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4) 직접방문

###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담당자(전화 063-350-25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 장수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법 제2조에 따른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미세먼지)
  -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 가. 질소산화물
  - 나. 황산화물
  -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3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제7조(저감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물품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저감장치 부착 등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 공공기관 차량 2부제
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 강화
4.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① 군수는 전북자치도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호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 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제1항제1호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31조 및 전북자치도 조례 제8조 각 호에 따라 운행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들에게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기관과 유관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기관과 유관 부서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도”를 “전북자치도”로 하는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공고 제2023-1106호

##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장 수 군 수

### 1. 제정이유

- 가.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2023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의 세부 근거 조항 반영 및 기타사항 보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나. 특히 「국민 제안 규정」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 전체구성인원의2분의1 이상을 국민(공무원제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제안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상위법령 반영(안 제4조)
- 나. 온라인 참여포털을 통한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
- 다.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규정 준수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변경(안 제7조)

※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

라. 제안의 채택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3. 참고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10. 1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우 55634/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043(063-350-5702)

3) 전자우편(이메일) : Orondo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정책팀(063-350-20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나.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군수”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장수군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장수군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장수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조제1항 중 “직접 또는 우편 등”을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수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국민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 행정청			
③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행정청 제출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 행정청: _____, 제출일시: _____)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p>「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_____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주제안자</b>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장수군수</b>    귀하</p>			
<p>※ 장수군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p>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성 방법**

-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 ② 제출 행정청: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청을 적습니다.
- ③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행정청 제출 여부: 동일·유사한 제안을 다른 행정청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 행정청과 제출 일시를 적습니다.
-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자유 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1. (생 략) 2. “지정제안”이라 함은 <u>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u>	제2조(제안의 종류) ----- -----. 1. (현행과 같음) 2. ----- <u>장수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u> ----- -----.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u>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u>  2. <u>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 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u> 3. <u>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u>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 --. 1. <u>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u> 2. <u>장수군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u>  3. <u>장수군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u>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 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신 설>

<신 설>

제6조(제안의 제출) ①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특정한 서식 없이 현행 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 또는 우편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장수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조(제안의 제출) ①-----  
-----  
-----  
-----  
-----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

②·③ (생략)

제7조(제안의 심사) ①접수된 제안은 받기 또는 연말에 장수군 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제안의 경우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심사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심사에 참여시켜야 하며 위촉위원은 장수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준한다.

③제안내용에 대한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당해 분기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분기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제안의 심사)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수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제10조(제안의 등급) 제안의 채택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삭제

<신 설>

제12조 (생 략)

<신 설>

범위 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등급) 제안의 채택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 제안

제17조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군정발전제안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제 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기대효과			
성명	전화번호	(직, 유래권)	(사무실)
주소	주소 : 출신 읍면(출향인의 경우) :	직업	(근무처)

- \* 붙임자료 : 1. 제안내용설명서  
2. 예산량감 및 국고, 조세수입증대역 산출 내역서  
3. 참고자료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제18조)

국민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 배경설			
③ 동일·유사제안의 [문항명] 개종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 배경설: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96(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 접수후의 출제여부 등 개인정보, 신청내용 등 관련 사항은 전자과 담당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① 현황과 문제점

② 개선방안

③ 기대효과

**박 보 방**

① 제목: 제출하여야 하는 국민제안서, 내용을 동등적으로 고려한 제목을 작성합니다.  
② 제목 필요성: 국민제안서를 제출할 필요성을 작성합니다.  
③ 용량: 유사제안서와 다른 행정청 제출 사유, 용량, 유사한 제안을 다른 행정청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음 경우 제출 행정청과 제출 일시를 작성합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서 제출에 기한은 기한을 할 사항으로서, 공동 제안자에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기여도, 당 필요성 등의 설명을 작성합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할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개인정보 등 불합법적인 정보, 명예 및 권리 상해의 우려가 있는지를 설명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서의 접수 후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설명해 표시하고,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통보받을 수단을 작성합니다.  
⑧ 처리의 용량: 국민제안 내용의 관련 법령, 행정제도, 행정 운영 현황의 용량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⑨ 개인정보: 용량성을 작성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작성합니다.

210mm x 297mm(세로방향) 75g/㎡

장수군 공고 제2023-1107호

## 장수군민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민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장 수 군 수

### 1. 제정이유

「장수군민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조문 추가 및 기타사항 보완을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규칙 제명 개정 :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나.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다. 제안의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라. 상위법령 개정 조문 변경 반영 및 오탈자 수정

### 3. 참고사항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10. 1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우 55634/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043(063-350-5702)

3) 전자우편(이메일) : Orondo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정책팀(063-350-20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나. 장수군민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지 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장수군민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규칙 제 호

### 장수군민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민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민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장수군민제안제도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조례”를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군민제안접수대장”을 “접수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제안의 심사) 군수는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5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7조(중진의 제5조) 중 “실무회의를둘”을 “실무회의를 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제목	제안자		제안 종류	심사 결과	채택 등급	부상 금액	비고
			성명	주소 또는 소속(직급)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장수군민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장수군민 제안제도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제안의 접수 등) ① <u>군수</u>는 연중 제안을 접수하며 <u>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군민제안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고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u></p> <p>② (생략)</p>	<p><u>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u>」-----</p> <p>-----</p> <p>-----.</p> <p>제2조(제안의 접수 등) ① <u>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u>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 --- <u>접수대장</u>-----</p> <p>----- . 다만, 우편·팩스 또는 「<u>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u>」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제3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①조  
 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  
 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관계부서  
 의 장은 당해 제안을 시행하여  
 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민제안제  
 도 운영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4조 (생 략)

제5조(실무회의) 조례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제안의 심사를 원활  
 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들  
 수 있다.

제6조 (생 략)

제3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①---  
 -- 제12조-----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제안의 심사) 군수는 접수  
 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7조(실무회의) -----  
 -----  
 ----- 실무회의를 들  
 -----.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 군보발행안내

###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